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

(김은영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2836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6. 7. 7.

발의의원 : 김은영 의원,
신동윤 의원, 곽동환 의원,
전홍배 의원

1. 제안이유

달성군의회 위원회 운영 체계 정비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,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안정적인 의회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본회의장 의석배정 기준 정비(안 제8조제1항)

나. 위원회 명칭 관련 조문 정비(안 제10조제1항)

3. 개정 조례안 : “붙임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붙임

나. 비용추계서 : 비대상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대구광역시 달성군의회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조제1항 본문 중 “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” 을 “일정한 기준에 따라” 로 하고,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한다.

제10조제1항 본문 중 “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” 를 “위원회” 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8조(의석배정) ① 의회 본회의장 (이하 “본회의장”이라 한다)에 의원의 의석은 의회 의장(이하 “의장”이라 한다)이 <u>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배정한다.</u> 다만,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의장이 <u>잠정적으로 정한다.</u> ② (생 략) 제10조(청가와 결석) ① 의원은 사고 등 부득이한 이유로 본회의나 제 25조에 따라 설치·운영하는 <u>상임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의 회의에</u> 출석하지 못할 경우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다만,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장이 관계 수사기관장으로부터 영장의 사본과 함께 그 체포 또는 구금된 사실을 통지받은 경우에는 이로써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. ② ~ ⑥ (생 략)	제8조(의석배정) ① ----- ----- ----- ----- <u>일정한 기준</u> <u>에 따라</u> -----. (단서 삭제) 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청가와 결석) ① ----- ----- ----- <u>위원회</u> ----- -----.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 ② ~ ⑥ (현행과 같음)

□ 「지방자치법(법률)」(2026.3.5. 일부개정, 2026.7.1. 시행)

제44조(의원의 의무) ① 지방의회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.

② 지방의회의원은 청렴의 의무를 지며,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.

③ 지방의회의원은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·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해서는 아니 된다.

④ 지방의회의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,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·단체 및 그 기관·단체가 설립·운영하는 시설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

⑤ 지방의회의원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관련된 영리행위를 할 수 없으며, 그 범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제52조(의회규칙) 지방의회는 내부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.